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면허증 포함)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연번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유효일자 (해당시)
			yyyy-mm-dd	yyyy-mm-dd

4. 경험 혹은 경력사항

*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할 수 있음

구 분	소속조직	역할/직위	활동기간	활동내용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yyyy-mm-dd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경험 <input type="checkbox"/> 경력				

* 직무활동, 동아리/동호회, 팀 프로젝트, 연구회, 재능기부 등 직무와 관련된 주요 활용을 서술하여 주십시오.
* KAIST 기간제근로자(별정직) 퇴직 후 재임용 제한 규정 관련하여, KAIST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기재 또는 거짓기재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응시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내용을 작성하였으며, 작성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자기소개서

1. 응시분야 지원동기를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2. 모집분야 직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본인의 강점을 경험에 비추어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3. 입사 이후 본인의 직무분야 전문성과 자기개발을 위한 계획을 기술하십시오.(600자 이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있음□ / 없음□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나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나목에 비해당(중복적용 안됨)

년 월 일

지 원 자

인